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현실무시”

보사부 입법예고 보육위·직장탁아소 의무화조항 논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으나 보육위원회 설치, 직장 탁아소 설치 의무화 조항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8, 9월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던 보사부가 애초의 방침을 바꿔 5개월이나 앞당겨 내놓은 시행령(안)의 주요 뼈대는 △서울 및 시·도·군·구에 보육위원회 보육센터의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비용의 80% 이상 보조의 사업주 부담 △시장·군수의 보육지도원 보육센터 직원 임면 등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시행령(안)이 △여성의 취업현실을 무시하고 △여성의 모성보호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를 크게 늘려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한 보육위원회는 관 중심의 자문기구 성격이 짙다”면서 “보육위원회의 위상은 관과 민의 중간단계로 설정해 보육비

결정·지원대상아동 선정·보육기본정책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상시 여성 근로자 1천명 이상인 곳은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기혼여성이 취업중인 곳은 상시 고용인원 1백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지적한 탁아특위는 △상시 고용인원을 3백명으로 하향조정하고 △교육·금융계 등 여성근로자 50명 이상의 사무직 사업장도 직장탁아소를 설치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 직장탁아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노총도 시행령(안)에 △직장탁아소 의무설치 사업장 규정이 너무 미약한 점과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성계, 노동단체의 의견을 모아 대폭 손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인천여성노동자회·전교조·전국병원노조 등 전국 14개 여성·노동단체는 6일 성명을 발표, △직장탁아소 의무설치 사업장을 3백명 이상으

로 확대하고 △금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여성노동자 50명 이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공동보육시설·보육수당지급 등을 하게 하는 규정을 넣는 것 등을 촉구했다.

여성계와 노동단체의 이런 반발에 대해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실은 “1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에 여성계와의 토론회를 비롯해 유아교육계·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진레이온 사망노동자 직업병 판정 보상해야”

인의협 성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윤종구 김기락 심재식 광영란)는 ‘원진레이온 사망노동자 김봉환씨의 직업병 판정시비’와 관련,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검 소견상 이황화탄소 중독 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직업병 판정관례로 볼 때 당연히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보상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